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단1319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4. 2.

판 결 선 고 2021. 5. 1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7. 7.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135,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1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 1) D 주식회사는 2013. 12. 6.경 B에게 금 300만원을 변제기 2018. 12. 6., 이자율 및 지연이자율을 각 연 36.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 2) C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였는데, D 주식회사는 2015. 8. 3. E 주식회사에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8. 5.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어 E 주식회사는 2018. 10. 26.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8. 11. 28.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3) 원고는 C를 상대로 위 양수한 대여금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45721)을 하였고, 위 법원은 “C는 원고에게 5,993,300원 및 그 중 300만 원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9. 5. 28. 확정되었다. 2020. 5. 21.을 기준으로 한 위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는 7,135,000원에 달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 1) C의 아버지 F은 2017. 4.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피고, G, C가 있었다.
- 2) 한편, F의 상속인들은 2017. 7. 11.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3)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던 C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이를 소유하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C 상속지분인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합의한 바에 따라 일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바로 매도하였고, 그 대금 중 C의 몫(1/3)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수익을 한 바가 없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위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C에게 분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인 C의 유일한 재산을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결국,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사해행위 후에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명하게 되면 당초에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로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H조합매곡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인 2017. 7. 25. 기존에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H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00만 원이 상환되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7,800만 원 상당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3,800만 원(7,800만 원 - 4,000만 원) 중 C의 상속지분 상당액인 12,666,666원(= 38,000,000원 x 상속지분 1/3, 원 미만 버림)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이는 앞서 본 원고의 채권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C 상속지분 상당인 12,666,666원을 한도로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 7,135,000원(2020. 5. 21. 기준 원고가 양수한 대여원리금 합계액이다)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 상당 배상금 7,1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박형순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375.84㎡, 2층 내지 4층 각 352.34㎡, 지하층 33.4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울산광역시 북구 대 94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80.58㎡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94000분의 5761 ㎡,

